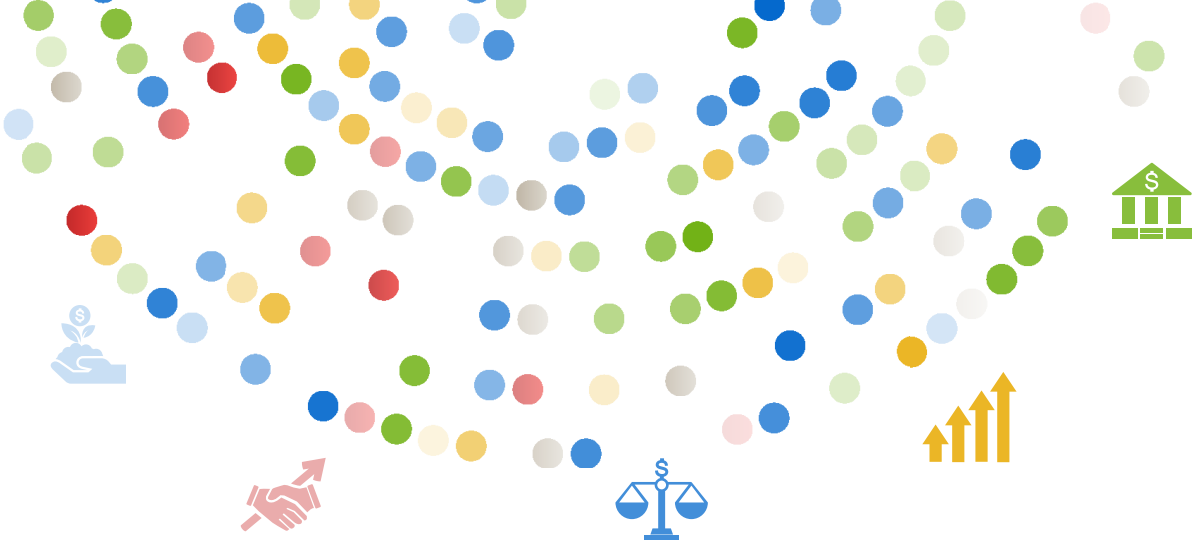


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2016.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CONTENTS

01. 도입 배경 1

02. 주요 권고사항 2

1. Part Ⅰ의 권고사항 2
2. Part Ⅱ의 권고사항 4

03. 국내 입법동향 6

04. 해외 입법동향 7

1. 북미 7
2. 유럽 7
3. 아시아/오세아니아 12
4. 요약 13

05. 요약 및 시사점 14

참고문헌 16

01 도입 배경

국제거래에 있어 상품이나 실체, 거래에 대한 국가 간 세무처리가 상이함을 이용하여 이중비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혼성불일치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A국에서는 부채로, B국에서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한 혼성불일치
  - A국은 지급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만 B국은 이를 국외배당소득으로 인식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
- A국에서는 과세실체, B국에서는 도관체로 보는 혼성실체를 이용한 혼성불일치
  - A국 법인의 100% 해외자회사인 B국 법인을 통하여 C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C국에서는 지급이자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만 A, B국 모두 관련 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음
- 주식대출, 판매후 재매입 계약(이하 repo)과 같이 A국에서는 담보부 차입거래로, B국에서는 양도거래로 분류되는 혼성거래를 이용한 혼성불일치
  - A국 법인이 B국 자회사(B')를 B국 법인에 repo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B국에서는 계약기간 동안 B국 법인이 B'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을 배당으로 보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나 A국에서는 A국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공제

OECD는 혼성불일치문제의 심각성 및 혼성불일치 효과 제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응방안을 포함한 Action 2를 발표함[1)]

- 혼성불일치약정을 통한 조세전략은 불법은 아니나, 개별 국가의 재정뿐만 아니라 조세 공평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상대국의 세무처리 방법과 연계된 국내법 규정(Linking rule, 연계규정)은 혼성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Action 2에서는 혼성불일치 효과의 해소를 위하여 국내법 및 조세조약의 개정 권고사항을 제시함

1)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02 주요 권고사항

■ Action 2는 Part Ⅰ과 Part Ⅱ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혼성불일치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국내법 개정에 대한 권고사항과 모델협약의 개선을 제시함

- (a) 혼성금융상품과 혼성실체가 조세조약의 혜택을 과도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OECD 모델협약을 개정
- (b) 지급자가 비용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수령지국에서 감면을 받거나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 조항의 도입
- (c) 수령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자가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법 조항의 도입
- (d) 다른 관할국의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이 비용으로 공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국내법 조항의 도입
- (e) 여러 국가에서 상기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국가 간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지침이나 최종 선정규정(tie-breaker rules)의 도입

1 Part Ⅰ의 권고사항

■ Part Ⅰ에서는 혼성불일치거래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첫째, 소득에서 차감/소득에 불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지급(Deduction/No Inclusion outcome, 이하 D/NI결과) : 지급지국에서는 비용으로 공제되나 수령자는 관련 소득을 경상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혼성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조건 및 혼성양도 등으로 인해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Disregarded payment made by a hybrid) : 혼성불일치를 의도한 거래나 지배그룹의 관계사간 거래를 이용하여 소득을 인식하지 않는 지급
  - 역혼성 실체의 지급(Payment made to a reverse hybrid) : 설립지국에서는 도관체로 간주되나, 투자자국에서는 과세실체로 간주되는 역혼성 실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지급

- 둘째, 이중공제되는 지급(Double Deduction outcome, 이하 DD결과): 동일 지급에 대하여 두 번 공제되는 경우
  - 공제가능한 혼성지급(Deductible payment made by a hybrid): 국외 지점 혹은 혼성실체를 통한 거래로서 지급지국에서 공제한 지급액을 모법인 관할국에서도 공제하여 혼성불일치가 발생하는 지급
  - 이중거주자의 지급(Deductible payment made by dual resident): 이중거주자가 양 관할국의 법률에 따라 지급액을 공제함에 따라 이중으로 공제되는 지급
- 셋째, 간접적 D/NI결과가 발생하는 지급: 조직화된 거래를 통해 불일치가 이전되어 간접적 D/NI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이전된 불일치 거래(Imported mismatch arrangements): 일반 대출과 같은 비혼성금융상품을 이용하여 역외 혼성불일치 효과를 국내로 이전하는 조직적 거래

■ **Part I은 혼성불일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법상 지급자의 해당 지급액의 공제를 부인하는 우선규정과 지급지국에 우선규정이 없는 경우 수령자의 소득에 해당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후속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 **Action 2의 혼성불일치거래 유형별로 권고하는 대응규정은 다음과 같음**

표 1 혼성불일치거래의 유형에 따른 Part Ⅰ권고사항

불일치 유형	거래유형	국내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규정	혼성불일치거래 유형별 대응규정		
			우선규정	후속규정	적용범위
D/NI	혼성 금융상품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에 대한 수령자의 배당소득면제 부인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에 비례하여 수령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한	지급자의 비용공제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특수관계자간 거래,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
	인식하지 아니한 혼성지급	-	지급자의 비용공제부인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동일 지배그룹 거래,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
	역혼성 실체의 지급	• CFC 규정과 역외투자제도의 개선 • 도관으로 분류되는 중개기관의 제한	지급자의 비용공제부인	-	동일 지배그룹 거래,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

불일치 유형	거래유형	국내법의 개선을 위한 특별규정	혼성불일치거래 유형별 대응규정		
			우선규정	후속규정	적용범위
DD	공제가능한 혼성지급	-	모회사의 지급액에 대한 공제부인	지급자의 비용 공제부인	우선규정은 적용제한 없음. 후속규정은 동일 지배그룹 거래와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
	이중거주자 지급	-	거주자의 비용 공제부인	-	우선규정의 적용에 제한 없음
간접 D/NI	이전된 불일치거래	-	지급자의 비용 공제부인	-	동일 지배그룹 구성원, 불일치를 의도한 거래

자료: OECD Action 2(2015), p.20

2 Part II의 권고사항

■ **Part II에서는 Part I의 권고사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조약이슈를 다루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약의 개정에 관한 설명을 다루고 있음**

- 이중거주실체와 관련된 조세조약 이슈, 도관체에 대한 조약 조항, Part I의 권고사항과 조세협약의 조항 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제를 다룸

■ **이중거주자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조세조약의 개정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또는 국내법의 개정이 권고됨**

- OECD 모델조세협약의 이중거주자와 관련된 규정은 실질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를 거주지로 판단하는 현재의 일률적 규정 대신 상황별로 판단하여 이중거주문제를 해결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 그러나 조세조약의 개정이 이중거주자와 관련된 모든 BEP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의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 또는 국내법의 개정이 권고됨

■ **도관체의 소득도 1999년 OECD가 발표한 The Application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to Partnership(이하 파트너십 보고서)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항과 주석서를 OECD 모델조세협약에 포함시키도록 결정**

- OECD의 1999년 파트너십 보고서는 파트너십에 대한 세무처리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 및 조세조약의 적용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음
- 도관체의 소득에 대하여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조세조약의 혜택이 적합한 상황에서 부여되도록 보장

■ **Part Ⅰ에서 제시된 각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의 개정과 OECD 모델조세협약이 상호 미치는 영향 및 각 상황별 검토 결론은 다음과 같음**

표 2 혼성불일치거래의 유형에 따른 Part Ⅱ권고사항

구분		검토사항	결론
국내법의 개정	지급자의 공제 부인	지급지국은 D/NI를 발생시키는 지급액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 → 조세조약이 공제를 부인할 만한 권한을 갖는지 여부	조세조약은 공제 및 과세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내법상의 문제임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지급지국에서 혼성불일치 대응을 위한 우선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수령지국에서 해당 금액만큼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포함 → 조세조약상 비거주자가 특정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소득이 개정된 국내법에 의하여 과세되어 조세조약상 문제가 발생되는지 여부	권고사항은 수취인이 거주자인 상황을 전제로 논의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배분규정은 각국의 과세권을 제한하지 아니함. 따라서 조약이 권고사항 도입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권고사항과 조세조약의 상호영향은 이중과세 해소에 관한 규정과 연관 있는 것임
	특별권고규정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지급액에 대한 수령자의 배당소득면제 부인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지급액에 비례하여 수령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한 → 조세조약의 이중과세 해소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권고사항과 조세조약 조항 간의 상호작용은 이중과세 해소에 관한 규정(OECD 모델조세협약의 제23A, 제23B)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권고규정은 OECD 모델조세협약의 제23A조 및 제23B조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임
조세조약의 조항	차별금지 조항	Part Ⅰ 권고사항의 일부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보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조세조약상 차별금지 조항과의 충돌가능성	Part Ⅰ의 권고사항은 지급액이 중복 공제되거나 상대방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거래 당사자간 세무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이는 OECD 모델조세협약 제24조 차별금지 원칙의 조문과 상충되지 아니함

자료: OECD Action 2(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03 국내 입법동향

■ **2016년 9월 기획재정부는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 비과세 방지를 위해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국내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힘**[2)]

-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입법이 추진되는 제도 중 하나로 기업과세의 일관성 확보를 언급함
- 기획재정부는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에 따른 혼성불일치 효과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임

2)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p.21

04 해외 입법동향

1 북미

■ 미국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하였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

- BEPS Action 2의 권고사항 6에 따라 국외자회사의 소득에서 공제된 동일 손실을 자국 내 법인에서 다시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Dual consolidated loss rule'을 2015년 9월 28일에 도입[3]함
- 권고사항 6은 이중거주자, 국외지점 혹은 혼성체와 같이 국가 간 거래구조를 통해 납세자가 지급하는 경우 이중공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모법인의 관할국에서는 중복 공제를 발생시키는 지급에 대하여 공제를 부인한다고 권고함

2 유럽

■ 오스트리아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면제부인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4]

- EU회원국과 비EU회원국 간의 배당소득 면제(EU/non EU portfolio dividend exemption)와 국외 거래에 대한 경영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는 지급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지급을 수령하였다면 적용하지 아니함
-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EU회원국과 비EU회원국 간의 배당과 국외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은 배당소득을 면제함
- 2015년 10월에 발표된 최종 Action 2의 보고서에 관한 개정입법에 대한 논의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3) 미국 국세청(https://www.irs.gov/irm/part4/irm_04-061-013.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4) http://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austriahighlights-2016.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체코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내국법에 입법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논의 중임**

- 혼성불일치 해소를 위해 배당소득면제에 관한 규정을 법안심의 중에 있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
- 계류 중인 후속규정은 지급자가 소득에서 공제가능한 지급을 수령자에게 대가로 지불한 경우 수령자는 해당 대가와 관련하여 배당소득면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덴마크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령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해당 지급을 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규정을 이미 마련하여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

- 내국세법에 이미 혼성불일치를 야기하는 비용의 이중공제에 대하여 해당 공제를 부인하는 규정[5]을 마련하였음
  -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되었다면, 덴마크의 거주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 또한, 덴마크세법의 소득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관계회사의 소득으로 외국세법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경우에는 덴마크의 거주자는 비용을 공제할 수 없음
- 국외에서 인식되지 않는 실체로 법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법인 혹은 국내에 PE를 설립한 국외법인의 경우 국내과세 목적에서 도관체로 간주하여 국외 모기업에 의한 지급금을 해당 기업이 공제할 수 없도록 국내법에서 규정함

■ **프랑스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혼성금융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의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EU 모회사-자회사지침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 중임[6]**

- 프랑스의 세무당국은 2014년 재정법에서 혼성금융방지(Anti-hybrid financing)규정을 마련함
  - 이자제한규정으로 신설된 2014년 재정법 제212조 I(b)에 따르면, 프랑스의 자국 내 법인이 그와 관련된 관계사 및 국외법인에 지급한 이자가 수령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25%의 최소세율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

5) Section 5G of the Tax Assessment Act(덴마크법률,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7341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6) http://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French-Tax-Authorities-release-final-regulations-on-anti-hybrid-financing-provisions.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프랑스는 혼성금융방지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개정된 EU 모회사-자회사지침(Parent-Subsider Directive)을 검토 중임

■ **독일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룹과세제도상 자회사의 결손금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

- 국내 모회사에 적용된 세법에 따라 부(-)의 소득(negative income)이 국외에서 고려되었다면 모회사의 부(-)의 소득(negative income)은 그룹과세제도에 따른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함[7)]
- 이는 동일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와 독일에서 이중으로 공제를 받는 이중거주 법인을 방지하기 위함임[8)]

■ **헝가리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득면제부인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

-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면, 헝가리는 과세소득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세법(Hungarian Tax Procedure Act) paragraph 2[9)]에 입법하였고 이는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음
- 해당 규정은 BEPS의 최종 Action 2 이전에 도입되어 일부의 사항이 추가 반영되어야 할 수 있으나, 아직 추가적인 개정에 관한 언급은 없음

■ **이탈리아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령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소득면제부인규정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부인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10)]**

- 비거주 법인이 분배한 소득이 과세 관할국에서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95%를 과세소득에서 제외함
- 재매입거래(Repo), 주식대여, 기타 이자발생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거래에서 이자·배

7) section 14.1.5 of the Corporation Tax Act(https://www.jurion.de/Gesetze/KStG/1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8)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OECD, 2012.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9) 유럽세법학회(http://www.eatlp.org/uploads/public/Hungary%20(11%20November%202015).pdf, p.6).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0)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OECD, 2012.04.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당·기타 수익금을 수령한 국내 납세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적 소유자로서 대여자에게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함

■ **노르웨이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Action 2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 중임**[11)]

- 국외법인이 지급하는 배당이 소득에서 공제되었다면 이를 지급받는 내국인은 배당소득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내국법을 개정하고 이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 2015년 10월에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외에서 이자로 분류되어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을 내국법에 의해 배당으로 분류되어 배당소득면제를 적용받아 이중으로 공제되는 점을 해소하고자 함
- 또한 이번 개정 이후에도 BEPS Action 2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힘

■ **포르투갈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일반적인 남용방지조항을 마련하여 자회사 혹은 국외회사에서 분여하는 배당에 대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Action 2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확인하기 어려움**[12)]

- 자회사의 소득이전과 관련한 경영참여면제(participation exemption)제도와 배당에 대한 소득면제는 지급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지급을 수령하였다면 적용하지 아니함
- 국내·외의 자회사로부터 과세되지 않은 자본이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 경영참여면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함
  - 포르투갈의 경영참여면제제도는 EU 모회사-자회사지침에 열거된 소득세 혹은 포르투갈 법인세율의 60%를 적용함

11) https://home.kpmg.com/xx/en/home/insights/2015/10/tnf-norway-budget-2016-more-about-proposed-tax-reform.html.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2) http://www.deloitte.com/content/dam/Deloitte/global/Documents/Tax/dttl-tax-portugalhighlight-2016.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영국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모든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하였음[13)]

- 2016년 재정법에 규정을 마련하여 2017년 1월 1일 이후 혼성금융방지규정(Anti-hybrid financing)을 시행할 예정이며, 신설되는 규정은 현행 규정인 Part 6A for Part 6 of TIOPA 2010을 대체하게 됨
- OECD가 권고한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우선규정과 후속규정을 영국 세법에 반영함
  - OECD의 우선규정에 따라 지급자가 지급한 대가가 수령자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은 경우,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된 해당 대가의 지급은 부인할 것임
  - 영국이 수령자의 관할국이고 거래 상대국이 우선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관련 소득을 영국에서 과세할 것임
- 혼성불일치 방지 등을 포괄하여 조세회피방지규정(Anti-avoidance legislation)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배당소득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외 관할국에서 적절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나 전체 세액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감소될 수 있음[14)]
  - 배당소득이 과세되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15)]

EU의 일부 국가들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4년 개정된 EU의 모회사-자회사지침(Parent-Subsider Directive)을 도입함

- EU 이사회는 2014년 12월 모자지침을 악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최소적용 기준을 적용하는 조세혜택 남용방지조항(Anti-abuse clause)을 도입하는 개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국법에 도입할 것을 EU 회원국에 권고함
  - 모자지침은 EU 회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천징수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임
  - 개정은 이러한 모자지침을 이용한 조세남용을 방지하고자 최소적용 기준을 통해 조세혜택을 제한함

---

1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rporation-tax-anti-hybrid-rules/corporation-tax-anti-hybrid-rules. 세법연구센터 ,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4) INTM170040(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17004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5) 영국 국세청(https://www.gov.uk/hmrc-internal-manuals/international-manual/intm654020).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은 개정된 모자회사 지침을 입법함
  - 프랑스는 도입할 예정임
  - 에스토니아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네덜란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핀란드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은 이미 시행 중임

3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은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완료하였음[16)]

- 일본은 국외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소득에서 공제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배당소득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도입하고 2016년 4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시행함
- 해당 규정은 2015년 세법개정에 반영되었으며, 개정 이전은 국외 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5%의 배당소득면제를 적용하였음

호주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Action 2에서 제안하는 일부 권고사항을 국내법에 입법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논의 중임[17)]

- 2015년 예산안을 통해 혼성불일치방지규정(anti-hybrid rules)의 시행을 검토할 것을 밝히고, 의견수렴을 거쳐 토론서를 발표하여 2016년 4월 8일에 후속 검토를 수행 중에 있음
- 우선규정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금융상품의 혼성불일치방지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고함
- 후속규정 중 차감이 가능한 배당소득면제의 부인은 수용할 것을 권고하되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제한은 시행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음

16) https://www.kpmg.com/jp/en/knowledge/article/japan-tax-newsletter/documents/2015-tax-reform-20150106.pdf.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7) http://taxboard.gov.au/consultation/implementation-of-anti-hybrid-rules/.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 **뉴질랜드는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미 소득면제부인규정을 마련하여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고 있으며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Action 2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 중임[18]**

- 뉴질랜드와 그 외 국가 사이의 세무차익거래를 제거하여 공제가능한 국외지분에 대하여 국외 배당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마련함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16년 7월에 뉴질랜드의 세무처리와 그 외 국가의 세무처리에 차이를 이용하여 영업거래 혹은 금융거래를 구조화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법인을 방지하고자 하이브리드 미스매치 규정의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4 요약[19]

표 3 주요국의 Action 2 권고사항 입법동향

국가		권고사항			
		우선규정	후속규정	특별규정	
				과세면제부인	세액공제
북미	미국	○	X	X	X
유럽	오스트리아	X	X	○	X
	체코	X	X	○	X
	덴마크	○	X	X	X
	핀란드[1]	X	X	○	X
	프랑스[2]	○	X	○	X
	독일	○	X	X	X
	헝가리	○	X	X	X
	이탈리아	X	X	○	○
	룩셈부르크[1]	X	X	○	X
	네덜란드[1]	X	X	○	X
	노르웨이	X	X	○	X
	폴란드[1]	X	X	○	X
	포르투갈	X	X	○	X
	슬로바키아[1]	X	X	○	X
	슬로베니아[1]	X	X	○	X
	스페인[1]	X	X	○	X
	스웨덴[1]	X	X	○	X
	영국	○	○	○	○
아시아/오세아니아	일본	X	X	○	X
	호주	X	X	X	X
	뉴질랜드	X	X	○	X

주: 1) 해당 국가들은 EU지침에 따라 혼성불일치를 해소하고 있는 나라들임
2) 프랑스는 일부 도입된 혼성불일치 규정 이외에 EU지침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1. 2016년 6월 30일 기준 현황임

18) 뉴질랜드 국세청(http://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16-other-beps-fact-sheet/new-zealands-plan).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에서 재인용

19) 세법연구센터,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05 요약 및 시사점

■ **Action 2는 국가별 세무처리의 불일치를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우선규정과 후속규정 등을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우선규정은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지급자가 지급한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국은 지급자가 소득에서 공제한 지급액을 부인할 것을 권고함
- 후속규정은 지급지국이 우선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수령자의 경상소득에 지급액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 이외에 특별규정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의 배제, CFC규정의 개선, 도관성의 제한, 중개기관의 정보보고의무 등을 권고함

■ **우리나라는 Action 2의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16년 9월 기획재정부의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세원관리를 위한 혼성불일치 효과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함

■ **해외 주요국의 Action 2 권고사항 입법동향을 살펴보면, 권고사항을 모두 도입한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부 도입하거나 향후 도입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음**

- Action 2에서 제기되는 이슈들은 Action 3의 CFC제도, 배당소득면제제도의 예외규정 등을 통해 이중비과세문제가 일부 개선될 수 있음
- 참고로, EU국가 등의 경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Action 2의 권고사항의 일부에 부합하고 있음

■ **국내외에서 국가 간의 세법 차이를 이용한 이중비과세 방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Action 2의 적용범위, 권고사항 등을 숙지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관련 투자국의 입법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지급자와 수령자의 관할국 법률에 따라 세무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장기과세이연을 포함한 이중비과세가 발생한 경우 Action 2의 권고사항에 따라 과세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음

- 지급자의 소득에서 공제된 지급액을 부인하거나 수령자의 소득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비과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과세소득이 재계산될 수 있음

참 • 고 • 문 • 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BEPS 프로젝트 조치별 대응방향(Ⅱ) 기업과세의 일관성확보」, 2015.11.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2015.0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 이행관련 국제동향」, 2016.

OECD,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Action 2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_____,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2012.04.

미국 재무부, www.treasury.gov
영국 국세청, www.gov.uk
호주 국세청, http://taxboard.gov.au
뉴질랜드 국세청, http://taxpolicy.ird.govt.nz
덴마크 법률, https://www.retsinformation.dk
유럽세법학회, http://www.eatlp.org

OECD, www.oecd.org
KPMG, www.kpmg.com
EY, www.ey.com
Deloitte, www.deloitte.com
pwc, www.pwc.com
IBFD, www.ibfd.org

혼성불일치거래 효과의 해소 관련 BEPS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